

우수내시경실 인증제 소독 및 감염관리 평가 항목

소독 및 감염관리 평가 항목은 총 28항목으로, 모두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.

| 분류 |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평가 항목 | 등급 |
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필수 항목(28항목) | |
| 소독 교육 (2항목) | 1 내시경 의사 전원이 3년 동안 최소 6평점 이상의 소독 교육 평점을 이수해야 한다. 2 내시경 세척과 소독을 시행하는 근무자는 3년 동안 최소 3평점 이상의 소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 | 필수 |
| 전세척 (2항목) | 1 내시경 검사 직후 내시경 표면의 이물을 제거하고 세정액을 흡입해야 한다. 2 내시경을 전용상자 또는 바구니에 넣어 검사실과 분리된 세척 및 소독실로 이동 시켜야 한다. | 필수 |
| 세척 (2항목) | 1 검사공, 밸브와 흡입채널의 솔질을 시행해야 한다. 2 매번 밸브와 고무마개 교환을 시행해야 한다. | 필수 |
| 소독 (4항목) | 1 고수준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. 2 소독제를 침전시킬 때 검사공 및 흡입관 등에 소독액을 주입해야 한다. 3 고수준 소독제의 최소 유효농도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교체해야 한다. 4 소독제 제조사 권장대로 소독제 침전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. | 필수 |
| 행굼 (1항목) | 1 소독 후 행굼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 | 필수 |
| 건조 (2항목) | 1 행굼 후 내시경 기기가 건조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. 2 내시경의 걸과 흡입관에 남은 물기를 없애고, 세워 걸어서 말려야 한다. | 필수 |
| 재처리 (1항목) | 1 매 검사 후 일대일 세척, 소독, 행굼이 이루어져야 한다. | 필수 |
| 보관 (2항목) | 1 소독된 내시경은 내시경 선단이 바닥에 닿지 않는 독립된 보관장에 세워 보관 되어야 한다. 2 내시경 보관장은 오염공간을 피해서 위치해야 한다. | 필수 필수 ¹⁾ |
| 내시경 부속기구 (1항목) | 1 내시경 부속기구는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거나 재사용 가능한 제품에 한정하여 재사용을 위해 멸균해야 한다. | 필수 |
| 송수병과 연결기구 (1항목) | 1 송수병과 연결기구는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멸균수를 사용해야 한다. | 필수 |

¹⁾ 필수 항목이지만 단기간 준비로 충족이 어려운 항목으로 향후 구체적인 변경 계획이 있는 경우 다음 인증 평가까지 3년간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.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
| 공간/시설 (4항목) | 1 내시경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세척 및 소독실 공간이 있으며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. | 필수 |
| | 2 내시경 세척 및 소독실에는 적절한 환기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. | |
| | 3 내시경을 세척 및 소독하는 공간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. | 필수 ¹⁾ |
| | 4 재처리된 내시경은 오염된 내시경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통로로 검사실로 옮겨져야 한다. | |
| 개인보호장비 (2항목) | 1 내시경 시술자는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. 2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시행하는 근무자는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. | 필수 |
| 소독관리장부 (1항목) | 1 재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환자, 시술 항목, 사용한 내시경과 세척소독기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. | 필수 |
| 감염관리 및 소독 관련 규정 (3항목) | 1 내시경 관련 명문화된 감염 및 내시경 세척과 소독 관리 지침이 있어야 한다. 2 내시경 소독의 정도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소독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. 3 내시경 소독의 정도 관리를 위해 최소 연 2회 이상 균 배양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. | 필수 |

¹⁾필수 항목이지만 단기간 준비로 충족이 어려운 항목으로 향후 구체적인 변경 계획이 있는 경우 다음 인증 평가까지 3년간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.